

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03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현재 동 조례에서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, 군정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해 봉사하는 이장에게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통신요금 지원 규정 신설
 - 제4조(실비변상) ④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(지방자치법)

나. 예산조치 : 이장 통신요금 지원비 34,380천원 2019년 1회추경에 편성 요구

다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19. 2. 25. ~ 3. 17.) 결과, 접수 의견 없음

- 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5)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실비변상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4조(실비변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 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 할 수 있다.</u>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평창군 이장 업무수행에 따른 통신비 지원비용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통신비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연평균 최대 45,840,000원 예상
 - 20,000원 * 191개리 * 12개월 = 45,840,000원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
연락처	(033) 330 - 2210